



[2010.9.23] [282 , 2010.9.15,]

() 044 - 201 - 3915

1 () 「 」 64 , , 가

[2010.9.15]

- 2 ()
1. " " 가 가 , 가
 2. " " 가 가 가
 3. " " 가 , (私設)
 4. " 가 "
 5. " " , , 가
 6. " "
 7. " " 가

[2010.9.15]

3 () 「 」 (" ") 10 1 (20 2

" ") (" ") (

1 가 4 1 2 「 」 ,

[2010.9.15]

- 4 (가) 64 2 1
- 가 (" ")
- 1 가
- 1.
 2. , 가 , (" ")
 3. ()
- 2 1
1. (, ,)
 - 2.
 - 3.
 - 4.
 5. ()

가 60

:

350

6.

7. (側道)

가

[2010.9.15]

7 ()

(橫斷) 가

[2010.9.15]

8 ()

1. 5

2. 3.25

3.

4.

15

5. ,

[2010.9.15]

8 2(가) 가

1. 500

2. 3

3. 가 15

[2010.9.15]

9 ()

1. 「 」 2 29 ((緣石)

2.

3.

, U (側溝)

20

4. (汚水) 가

30

60

U

[2010.9.15]

10 ()

1.

2. , 가

3. 0.3 , 가

4. 1 30 U ,

5. 가

6. 가

[2010.9.15]

11 ()

1. 1 , 가

2. 가

, 가

3. 0.25

4. 가

[2010.9.15]

12 ()

1. 가 ,

2. 가

[2010.9.15]

13 () 가

[2010.9.15]

14 <2002.4.27>

< 282 ,2010.9.15 >

1 () 2010 9 23 .

2 () 9 가

.

[별표 1] <개정 2010.9.15>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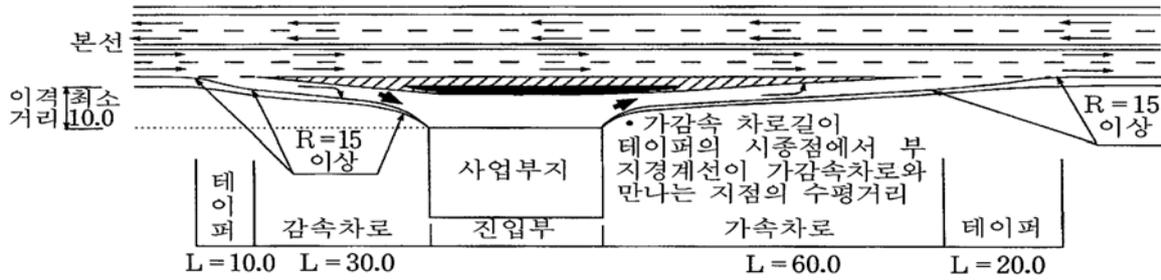
도면명	작성요령
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단면도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 [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공사도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개정 2010.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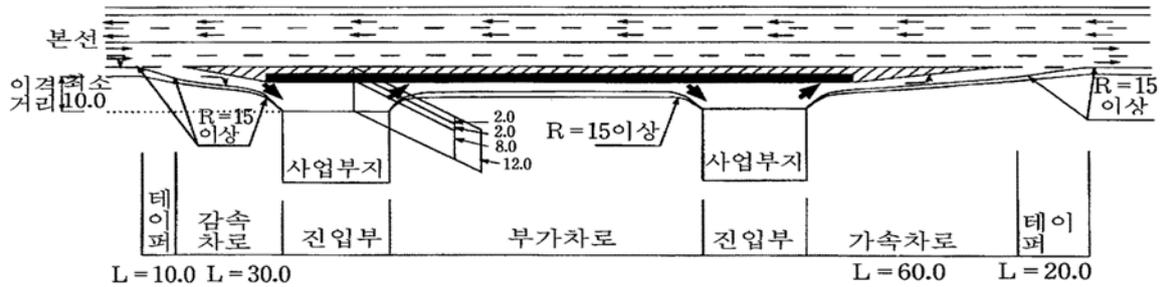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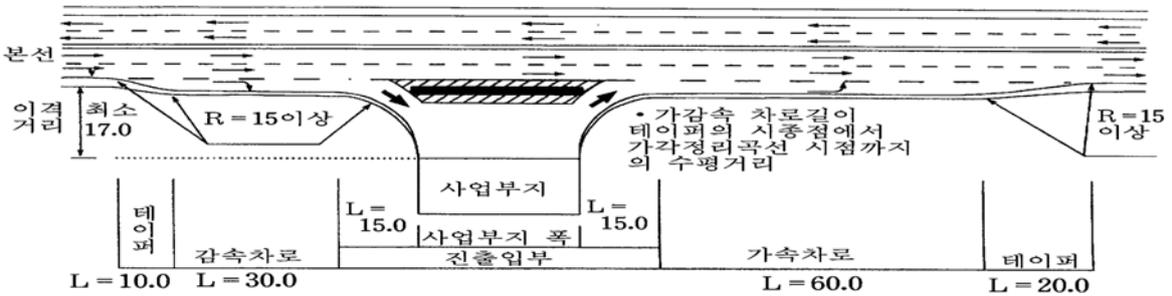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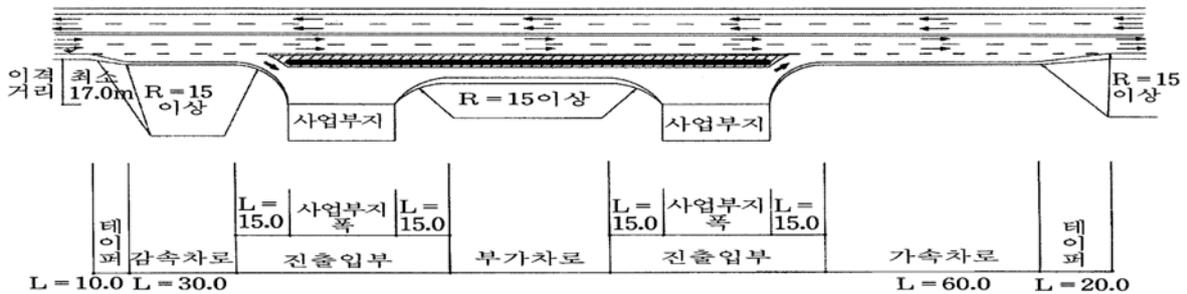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경,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별표 3] <개정 2010.9.15>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단위: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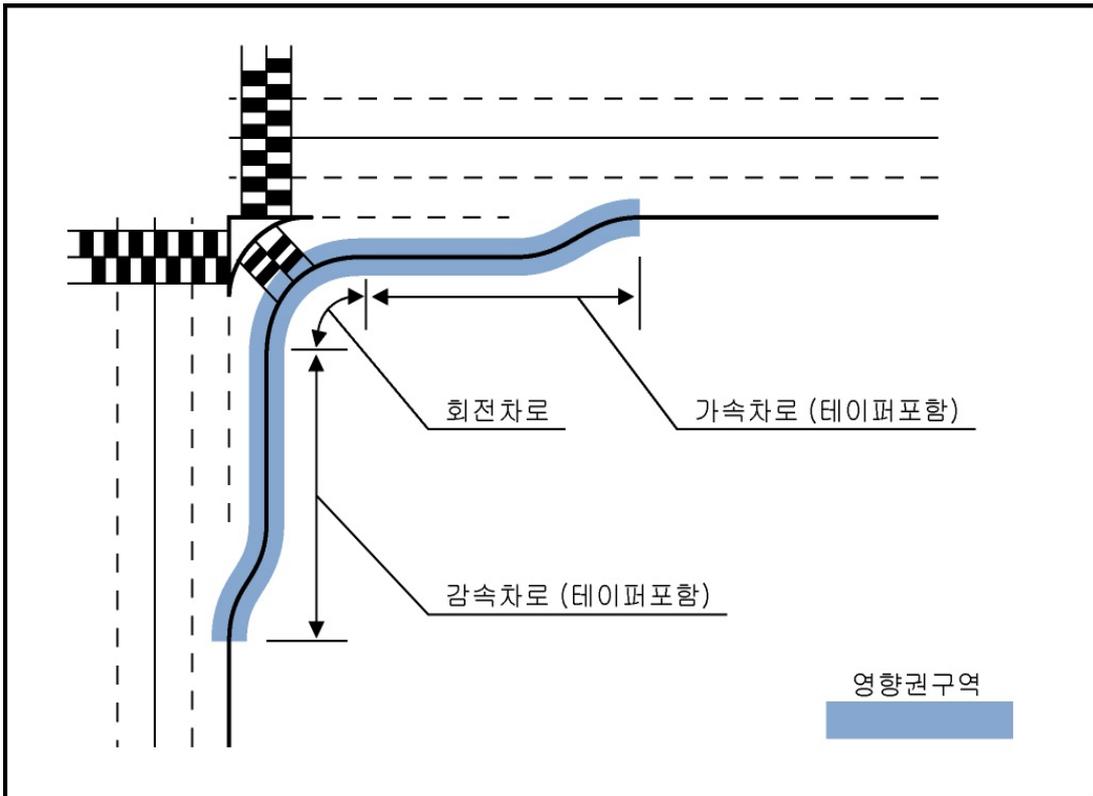
비 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개정 2010.9.15>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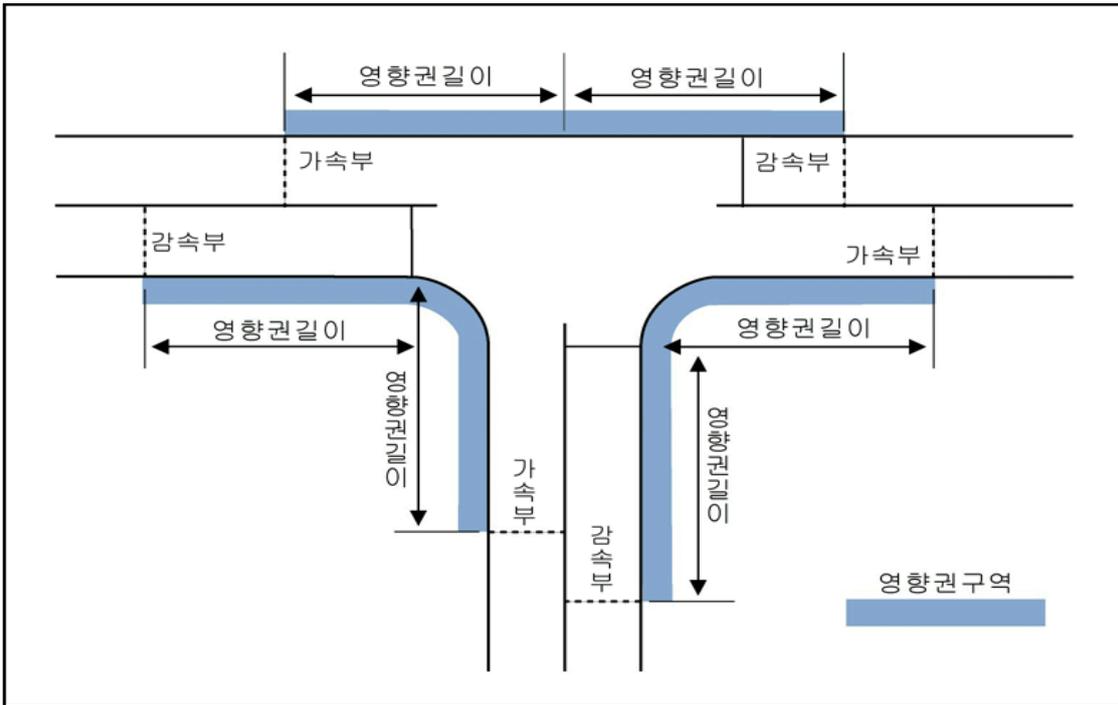
2.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교차로 영향권 길이(미터)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50	50	30
60	70	40
70	90	60
80	12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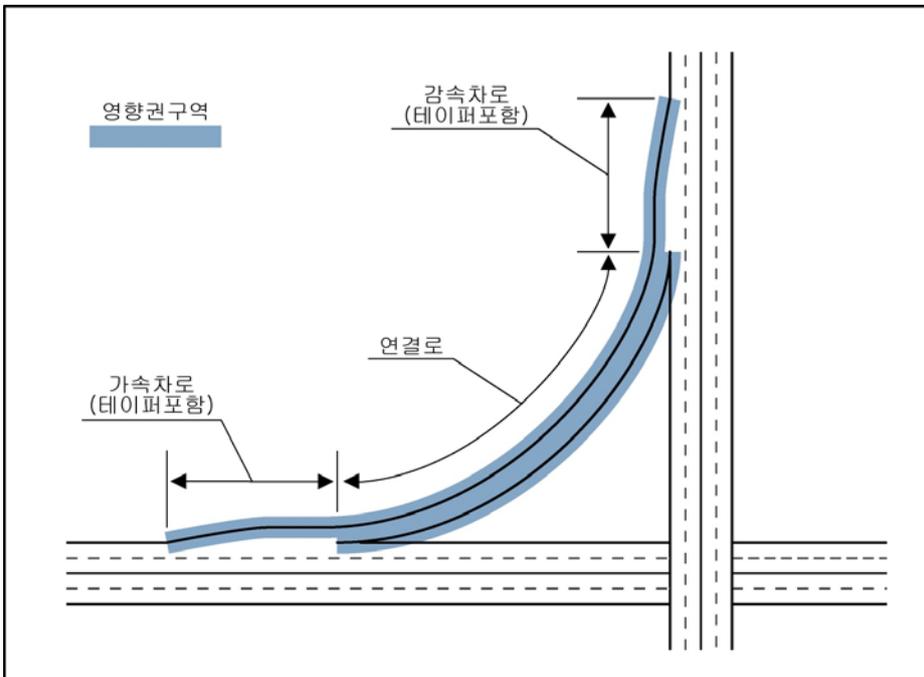
- 나. 교차로 영향권의 길이 측정기준은 아래 예시도와 같이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적용하며, 세갈래교차로의 직진 차로부에는 교차로 중심에서부터 적용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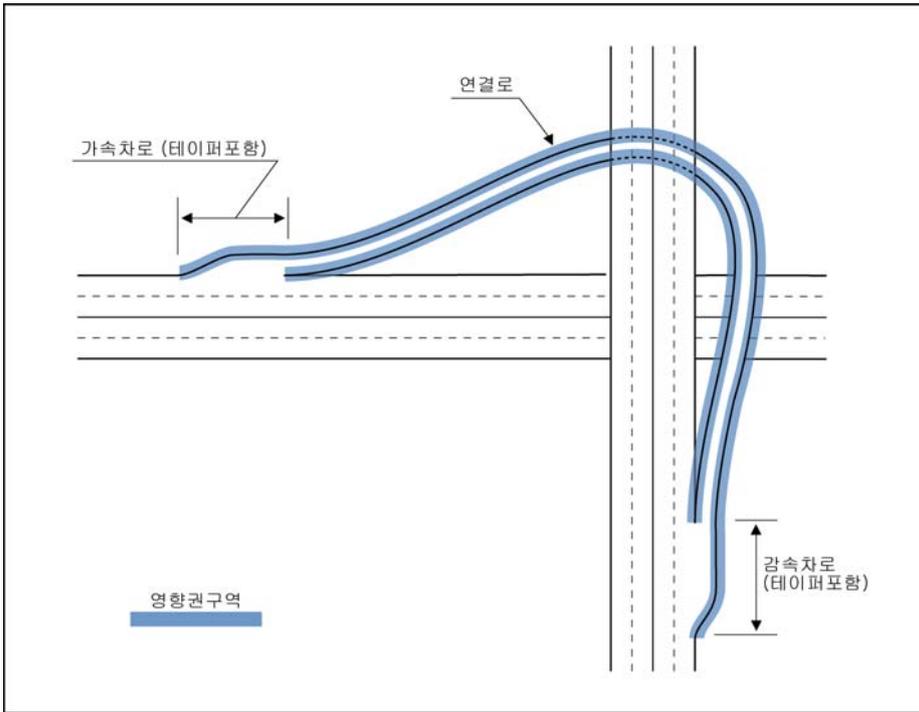


3.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1>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예시도 2>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별표 4의2] <개정 2010.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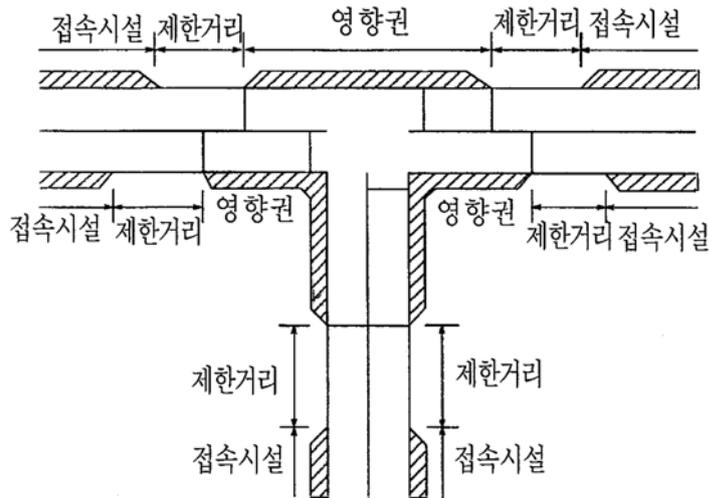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4호 관련)

(단위: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6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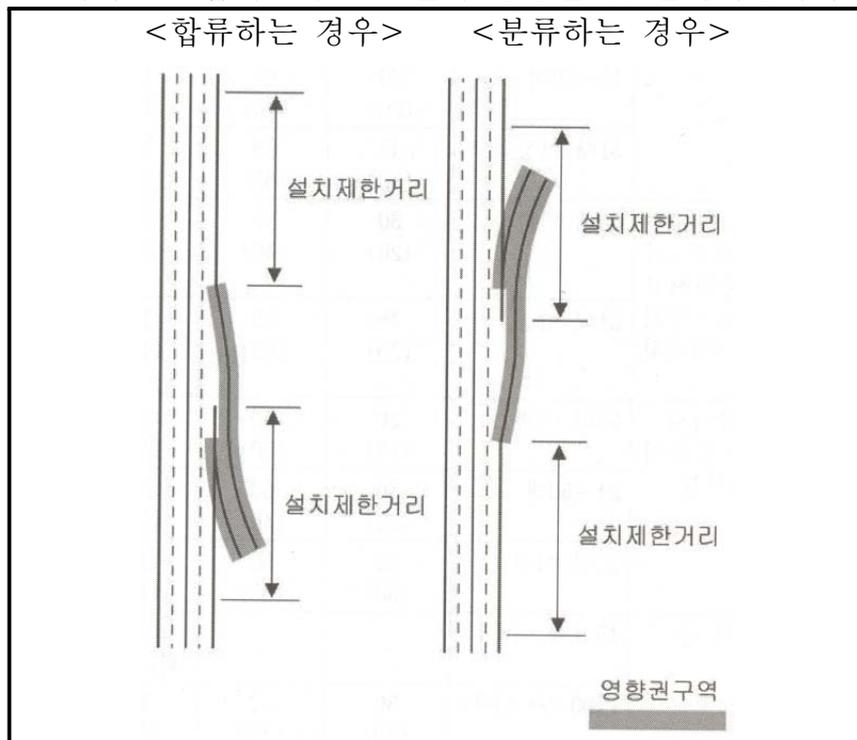
비 고

1. 평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2. 입체교차로의 경우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후방으로 설치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예시도> 입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별표 5] <개정 2010.9.1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는 제외됨)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 진입로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6. 주차장·건설기계 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 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 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 생활시설 및 기타 시설	2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 집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	

				화(곡선반경: 3미터)	
	(100가구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경: 3미터)	

* 주

-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신청안내

(뒷면)

<p>근거법률</p>	<p>○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 38조제1항). ○도로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64조제2항).</p>																			
<p>처리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0%;">신 청 인</td> <td colspan="4">처 리 기 관</td> </tr> <tr> <td>신 청 서</td> <td>→</td> <td>접 수</td> <td>→</td> <td>현지조사</td> <td>→</td> <td>검 토</td> </tr> <tr> <td>발 급</td> <td>←</td> <td>허 가 서</td> <td>←</td> <td>결 재</td> <td>←</td> <td></td> </tr> </table>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p>유의사항</p>	<p>○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p>																			

※ 작성방법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 ⑦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 ⑪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⑬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 신청안내

(뒷면)

<p>근거법률</p>	<p>○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1항). ○도로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64조제2항).</p>																			
<p>처리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신 청 인</td> <td colspan="4">처 리 기 관</td> </tr> <tr> <td>신 청 서</td> <td>→</td> <td>접 수</td> <td>→</td> <td>현지조사</td> <td>→</td> <td>검 토</td> </tr> <tr> <td>발 급</td> <td>←</td> <td>허 가 서</td> <td>←</td> <td>결 재</td> <td>←</td> <td></td> </tr> </table>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p>유의사항</p>	<p>○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p>																			

※ 작성방법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 ⑦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 ⑨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신청안내

(뒷면)

<p>근거법률</p>	<p>○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1항).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변경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64조제2항).</p>															
<p>처리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신 청 인</td> <td colspan="4">처 리 기 관</td> </tr> <tr> <td>신 청 서</td> <td>→</td> <td>접 수</td> <td>→</td> <td>현지조사 → 검토</td> </tr> <tr> <td>발 급</td> <td>←</td> <td>허 가 서</td> <td>←</td> <td>결 재 ←</td> </tr> </table>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p>유의사항</p>	<p>○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p>															

※ 작성방법

<p>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⑦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p>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①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소					
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③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④ 도로의 연결지점									
⑤ 사용 목적									
⑥ 도로시설물 시공 현황		⑦ 시공물량			⑧ 미시공물량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1.2em;">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작성자: (서명 또는 인) </div>									
유의 사항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